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9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고용진 · 이낙연

윤관석 · 김영주 · 양향자

이수진 • 정청래 • 양기대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폭력,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,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을 보호 시책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음.

그러나 체육계에서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 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관리하도록 하여,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(안 제18조의9 신설)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9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관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	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 <신 설></u>	제18조의9(영상정보처리기기의
	설치·관리) ① 문화체육관광부
	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
	대한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
	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
	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
	설치・관리하여야 한다.
	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
	<u>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관리</u>
	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
	보호법」에 따른다.